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20도13700 의료법위반, 출입국관리법위반
피 고 인 피고인
상 고 인 피고인
변 호 인 변호사 양경식(국선)
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. 9. 21. 선고 2020노3289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12. 10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기록을 살펴보면,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(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도2134 판결 참조).

나아가 살펴보더라도,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

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'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'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민유숙	_____
	대법관	김재형	_____
	대법관	이동원	_____
주 심	대법관	노태약	_____